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조신형 · 김인식 의원외 4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5월 15일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 권태환

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일 조신희·김인식 의원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영유아 발달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- 나. 대전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세분화함(안 제9조).
- 다.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 등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해 규정함(안 제12조).
- 라. 보육시설 등에 대한 비용보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20조).
- 마. 일부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, 안 제11조 등).

3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, 영유아 발달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, 안 제11조는 용어의 정비를,
- 안 제7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보육전문가, 보육시설의 장 대표, 보육교사 대표, 시의원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,
- 안 제9조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, 위촉위원의 회의 출석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0조는 보육정보센터 위탁시 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2조는 보육정보센터의 “자문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변경하고, 위원수·위촉위원 대상을 정하고, 위원의 임기·회의·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14조는 취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6조는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위탁시 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20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

해당하는 자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,

이는,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,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 범위에 따라 연간 약 14억원에서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,

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대상·기준 및 예산확보 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